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
2017.8.30(수)

목차

- I.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 기준
- II. 보험회사의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 III. 고위험직종 종사자 보험가입 확대 방안
- IV. 결 론

I.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 기준

1. 위험도에 따른 보험계약 인수 심사
2. 보험계약 인수 심사의 필요성
3. 보험료 차등의 필요성
4. 보험회사의 특성이 인수 기준에 미치는 영향

1. 위험도에 따른 보험계약 인수 심사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①**보험료 차등**이나 ②**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③**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음

보험료 차등

- 직업별 위험도를 반영함으로써 다른 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
- 직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은 상해 담보에만 해당
- 고위험이 저위험에 비해 상해담보의 위험률이 2배 이상임

보장범위 가입금액제한

-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위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장 범위나 가입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함

보험가입 거절

- 가입금액 제한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을 거절하여 리스크를 회피함

2. 보험계약 인수 심사의 필요성

-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도 함

손해율 관리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여 보험료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직업 종사자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하여 위험도가 낮은 **다른 계약자도 높은 보험료 부담**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

-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이 크거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계약을 인수할 경우, 보험상품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보험회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인수 기준은 다름**

보험료 차등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제한

가입 거절

3. 보험료 차등의 필요성

-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할 경우, **보험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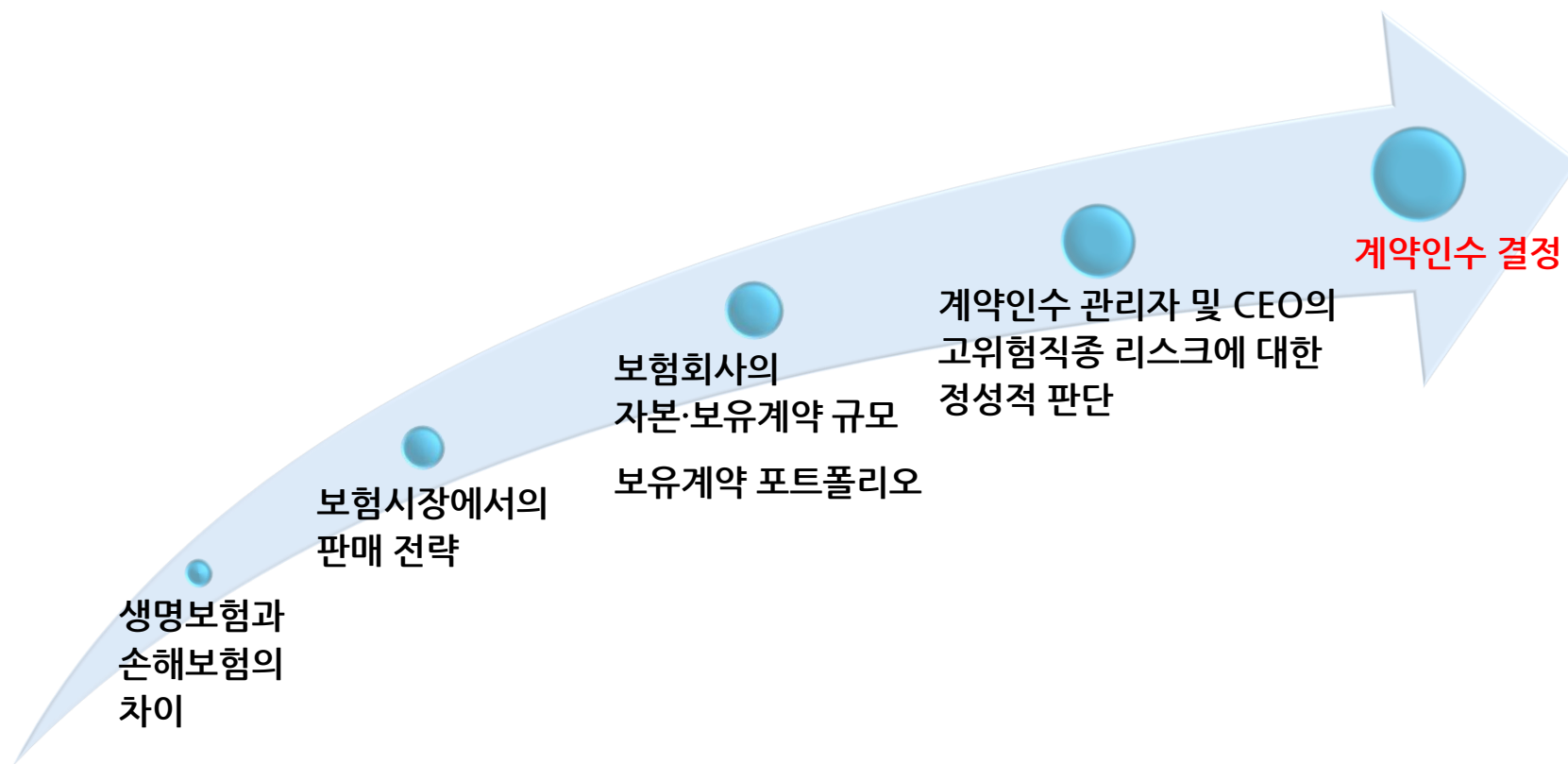
Death Spiral

- 보험료 차등이 허용되지 않고 전체 평균보험료만 부과한다면, 자신의 위험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저위험 가입자들은 보험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이탈하고, **고위험 가입자들만 보험시장에 남는 현상**을 설명하는 보험 이론

일차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하고, 보험료 차등이 어려울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함

4. 보험회사의 특성이 인수 기준에 미치는 영향

-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약인수 기준은 회사의 특성에 따름**
- 회사의 고유의 기준으로, 구체적인 거절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회사별로 인수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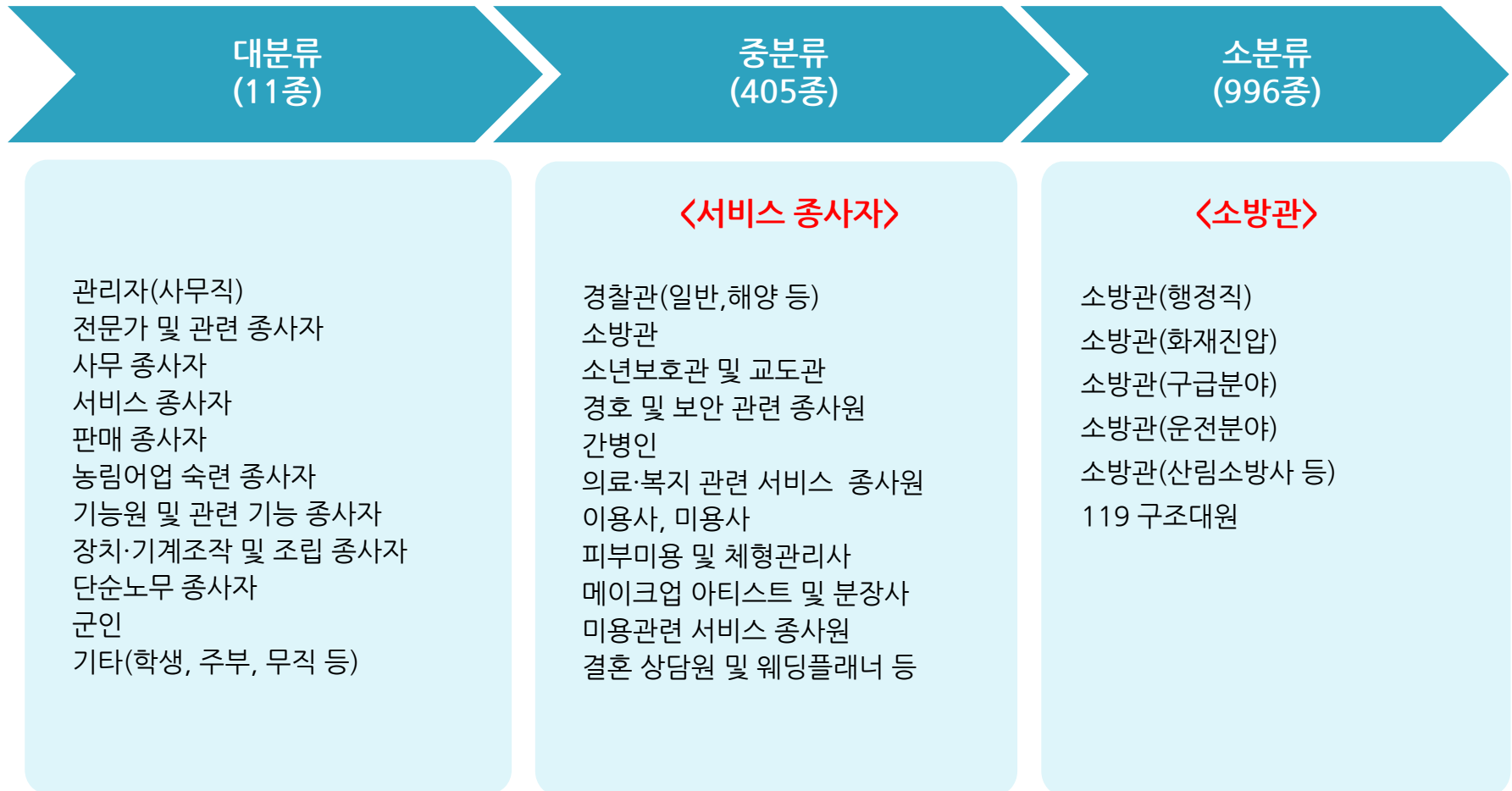


II. 보험회사의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1. 보험회사의 직업분류표
2. 직업의 위험도 반영
3. 보험계약 인수 현황
4.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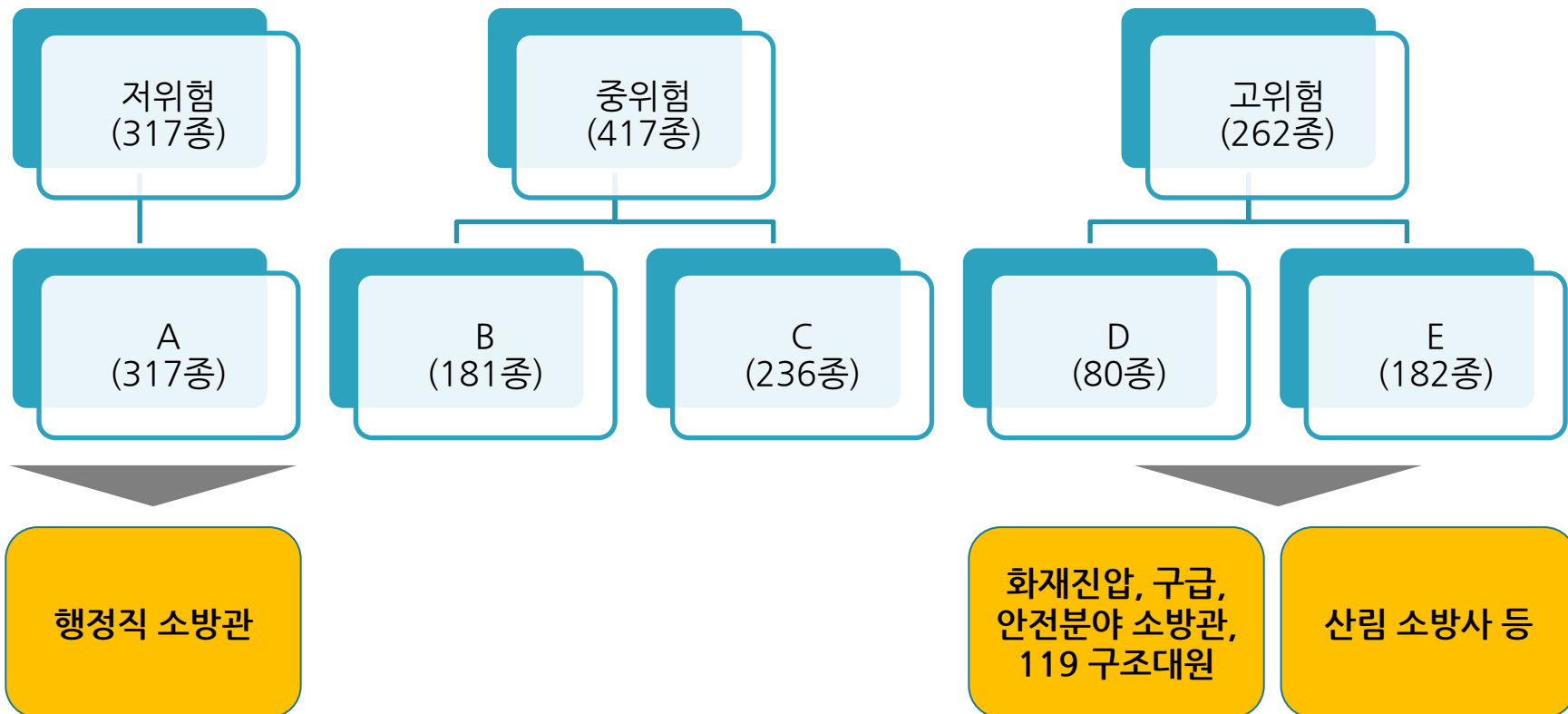
1. 보험회사의 직업분류표

- 보험회사의 직업 분류표는 대분류 11종, 중분류 405종, 소분류 996종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분류는 실제 수행하는 직무를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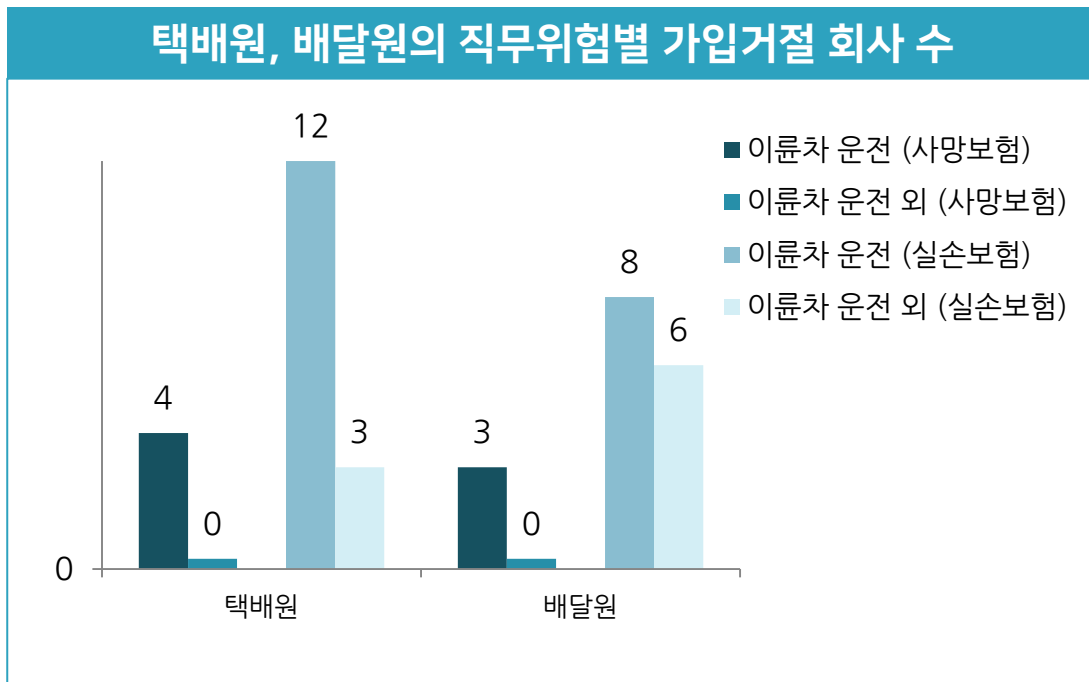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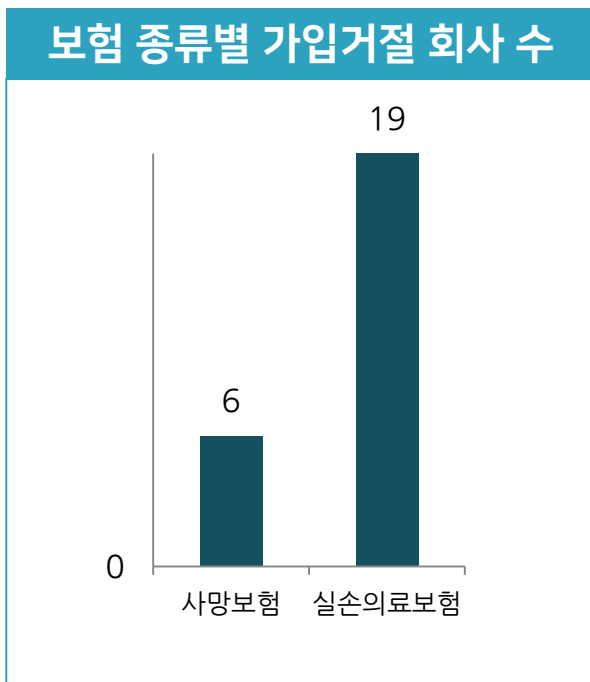
2. 직업의 위험도 반영

- 소분류 996종의 직업은 위험도에 따라 A, B, C, D, E 직군으로 구분되며, 중분류에서 같은 직군으로 분류된 직업(예: 소방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직무에 따라 위험도가 달리 평가됨



3. 보험계약 인수 현황

- 가입거절 직업은 보험회사 및 보험 종류별로 상이하며, 사망보험에 비해 의료실손보험의 가입거절 직업 및 회사가 많음
- 직무상 위험이 가입거절의 일반적인 이유이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가입 거절하는 직업도 있음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4.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해외 사례

-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함

영국	➤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요율 차등, 보장금액 제한, 가입 거절을 하기도 함 • 특정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기도 함 • 위험직 종사자가 보험가입거절 되는 경우, 중개인들이 보험가입을 주선했음
독일	➤ 직업별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기본 원칙으로 함 • 보험료 및 계약인수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직업별 그룹을 관리하고 보험료 산정 및 보험가입금액 결정 등에 반영
미국	➤ 경찰, 소방관, 군인에 대한 보장은 정부 혹은 전문 보험회사가 담당 • 경찰 및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 •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추가 담보는 개인비용으로 가입 • 군인은 자가보험 형태로 생명·건강보험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까지 제공
일본	➤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보장내용을 제한 • 소방관 및 자위대원 등은 보장금액에 제한을 두기도 함 • 상해담보는 직종을 A, B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차등 및 인수심사 실시 • 소방관은 전국소방협회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 가능

Ⅲ. 고위험직종 종사자 보험가입 확대 방안

1. 보험 원리 측면의 접근
2. 사회 복지 측면의 접근
3.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지원 제도
4. 소방공무원 사례

1. 보험 원리 측면의 접근

- 보험 원리로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방안	효과
직업별 손해율 통계를 모든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유	회사 데이터 부족으로 인수 거절했던 직업에 대해 인수 가능성 증가
위험도에 적절한 보험료 부과, 보험요율 세분화, 손해율에 입각한 직업별 요율 산출	요율 세분화에 따른 통계적 안정성 저하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종의 불만
일부 담보 제외	민원 증가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민원 증가
직무 수행중 상해는 보장하지 않거나 가입금액 제한	민원 증가 직무 수행중 상해인지에 대한 다툼 발생

2. 사회 복지 측면의 접근 (I)

- 사회 구성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손해율이 높은 고위험직종의 계약 인수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 (즉, 보험가입 거절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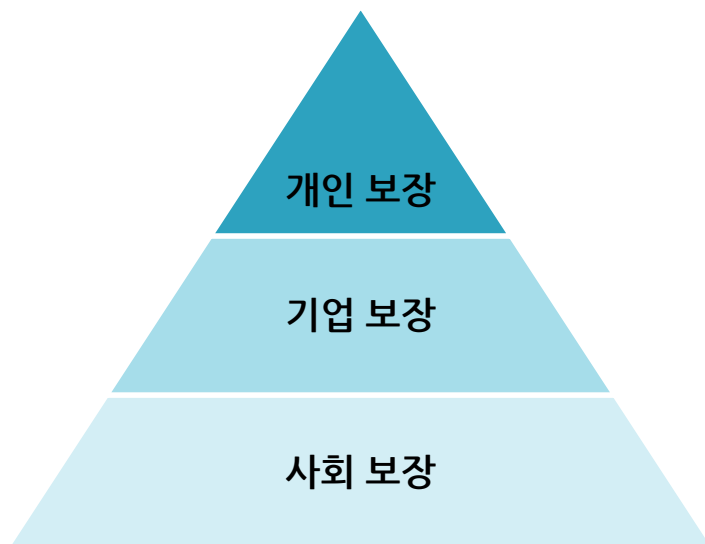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보험가입거절 금지는 요율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음

2. 사회 복지 측면의 접근 (II)

- 개인보험은 정부나 기업(고용주)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3층 보장론



개인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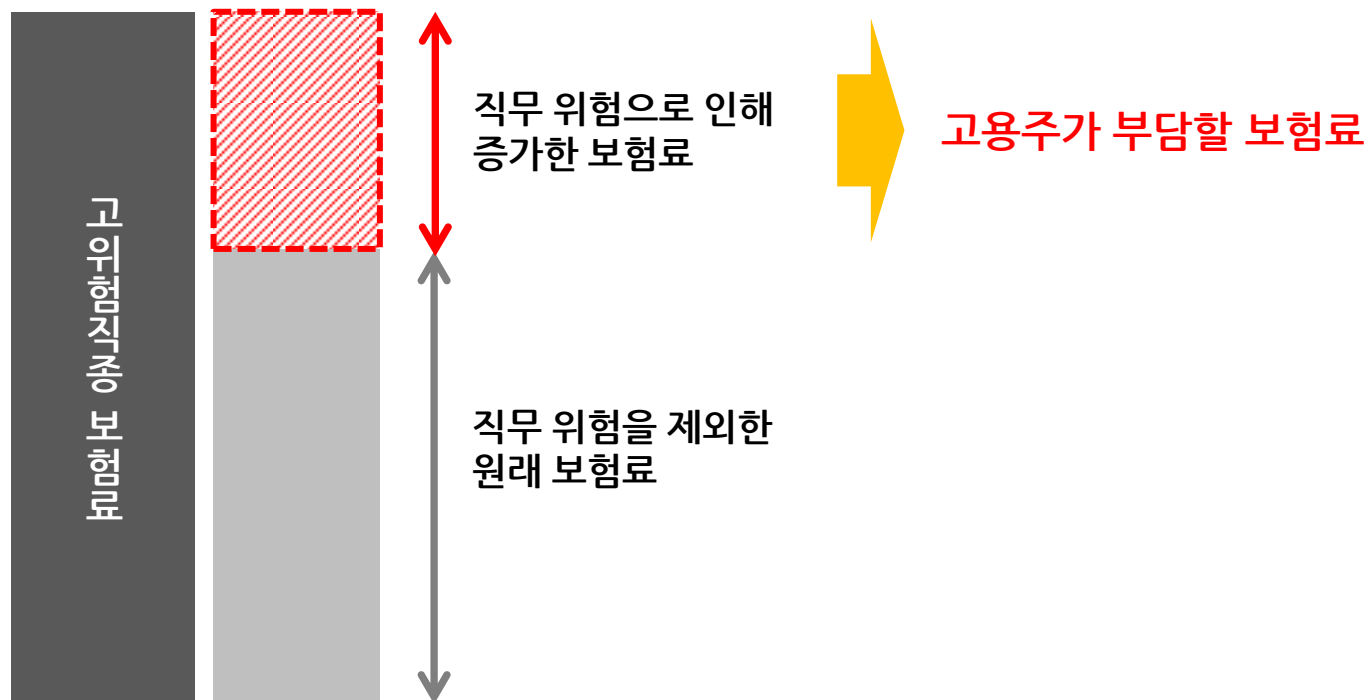
기업이 종업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국가가 국민생활의 최저 수준을 보장

- 개인보장을 하려 하였으나,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직업)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2. 사회 복지 측면의 접근 (III)

- 직무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기업 및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3.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지원 제도

- 정부나 기업(고용주)의 역할을 강화하여 단체보험 확대나 정책성 보험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

기업 보장

-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고위험직종 종업원의 단체보험 가입 의무화 및 확대 또는 보험료 지원 방안 검토

정부 보장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하위 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 군인, 경찰,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의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검토

3.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지원 제도: 정책성 보험 사례

- 정책성 보험은 주로 재난적 손실에 대해 도입한 것이 일반적이나, 농업인·어업인 안전보험처럼 개인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한 사례도 있음

농업인·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도입시기	2016	2016
근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사업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장내용	농업작업 관련 안전재해 또는 질병	어업작업 관련 안전재해 또는 질병
보험사	원수보험사: NH생명보험 재보험사: 코리안리	원수보험사: 수협중앙회 재보험사: 코리안리
정부 보조	순보험료 및 사업비의 50%	순보험료 및 사업비의 50%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4. 소방공무원 사례

-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3총보장론 측면에서 개인보장을 완성하기 위해 고용주(정부)가 피고용인을 지원하는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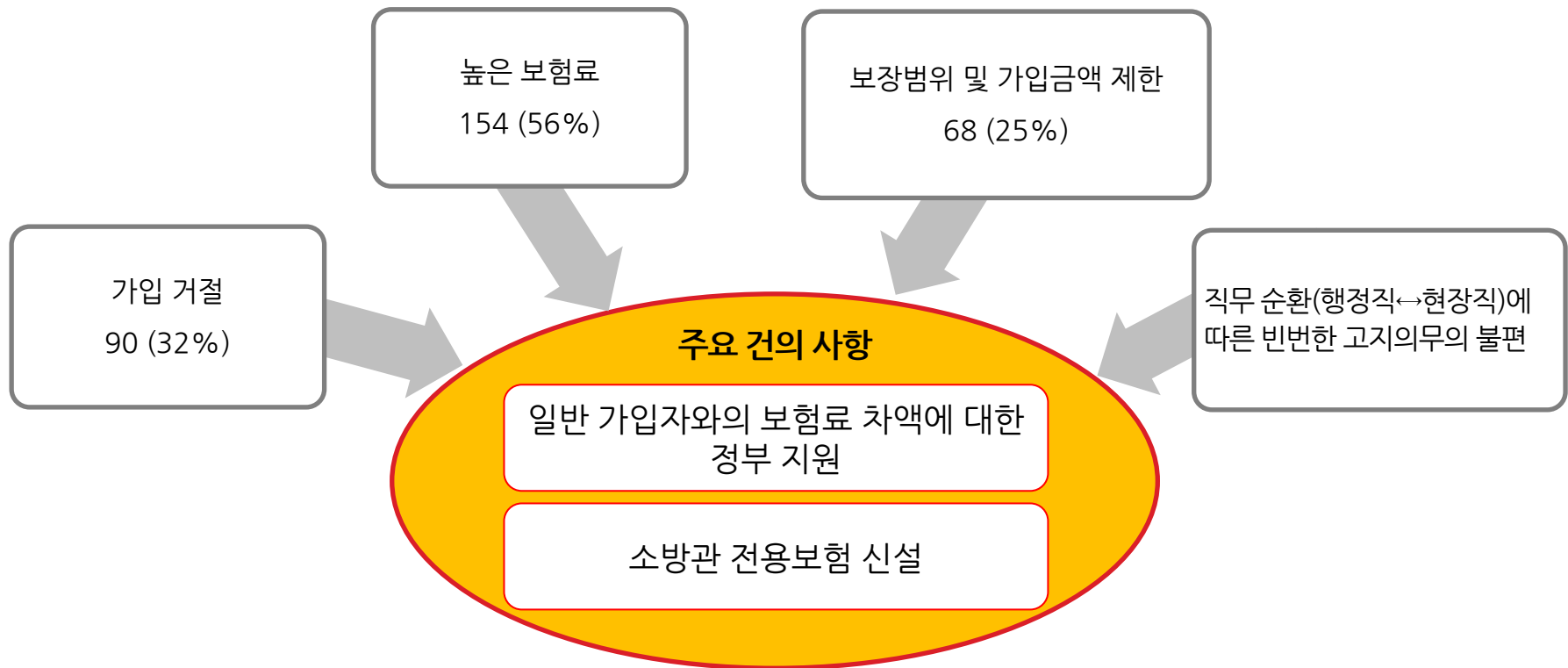
열악한 근무 환경이 화제가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1차적인 지원 실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공무원 전반으로 확대

4. 소방공무원 사례: 개인보험 가입시 애로사항

-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 가입시 불만사항으로는 ①**높은 보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②**가입거절**, ③**보험범위 및 가입금액 제한**이 그 다음을 차지함
- 건의사항으로는 **보험료 지원**, **전용보험 신설** 등이 있음

소방공무원 개인보험 가입시 주요 애로사항 (총 응답 277, 중복 응답) 및 건의사항



4. 소방공무원 사례: 단체보험 vs. 정책성 보험

-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을 확대할 경우, 소방청의 행정부담 또는 지방 재정 및 보험료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보장내용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성 보험**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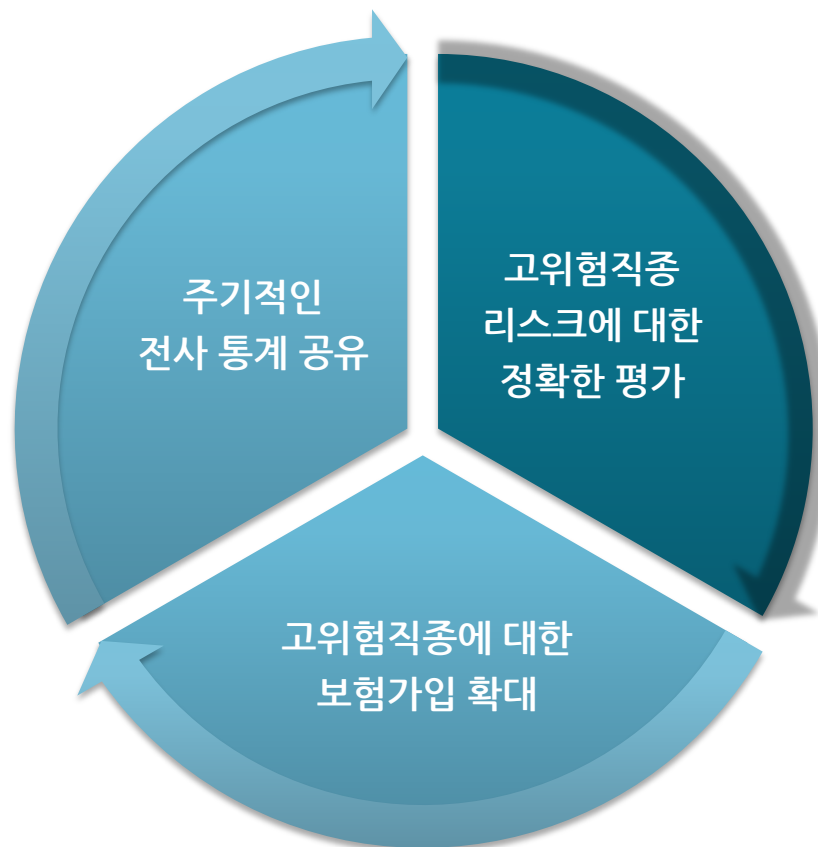
	단체보험 (전국 단위로 운영)	단체보험 (지역 단위로 운영)	정책성 보험
장 점	가입심사 없이 가입	- 가입심사 없이 가입 -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므로 지역 소방재난본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음	- 가입심사 없이 가입 -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 -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운영에 대한 정부의 행정 부담이 작음
단 점	- 단체보험 운영을 위한 소방청 차원의 행정 부담이 큼 - 지역별 단체보험과 중복 우려	지역별 보험 요율 차이와 지역별 재정상황에 따라 보장 차이 발생 가능	

IV.결 론

1. 보험회사의 역할
2. 정부 및 기업(고용주)의 역할

1. 보험회사의 역할

- 고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확대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고위험직종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기적인 전사 통계 공유** 등의 방안이 필요함



2. 정부 및 기업(고용주)의 역할

- 기업이 고위험직종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나머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기업

- 고위험직종 종업원에 대한 **단체보험 확대 및 보험료 지원**

정부

-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성 보험 지원** 검토
-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이외에 **정책성 보험가입 지원** 필요
-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제도 정착 이후에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

감사합니다

부록 1. 소방공무원 안전보험 가입 예시 (정액형)

보장 예시 (정액형)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지급 조건
	1형	2형	3형	
질병사망	5천만원		5천만원	질병으로 사망 시
상해사망	1억원		1억원	상해로 사망시
후유장해	최대 1억원		최대 1억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시
상해 입원 I		1일당 3만원	1일당 3만원	상해로 입원시
질병 입원				질병으로 입원시
상해 입원 II		5만원	5만원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수술비		50만원	50만원	상해·질병으로 수술시
골절 진단비		30만원	30만원	상해로 골절 진단시
깁스 치료비		30만원	30만원	상해·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부록 2. 소방공무원 안전보험 가입 예시 (실손형)

보장 예시 (실손형)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지급 조건
	1형	2형	
질병사망		5천만원	질병으로 사망 시
상해사망		1억원	상해로 사망시
후유장해		최대 1억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시
상해 입원	연간 5천만원 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실비	상해로 입원 치료시
질병 입원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상해 통원	일당 30만원 한도	일당 30만원 한도 실비	상해로 통원 치료시
질병 통원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주: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특약 포함

부록 3. 소방공무원 안전보험 예산 추정

- 정책성 보험 예산은 소방공무원 4만4천명 기준으로 연 70억원 정도 소요 예상됨 (보험료 50% 지원시)

정액3형 기준		
27만6천원	×4만4천명×50%	= 약 61억원 (남자 40세)
27만원		= 약 59억원 (여자 40세)

실손2형 기준		
30만4천원	×4만4천명×50%	= 약 67억원 (남자 40세)
33만1천원		= 약 73억원 (여자 40세)

주: 개인별 연간보험료는 보험개발원 참조위험률 (고위험직종) 기준으로 산출
제도 도입시 보험회사가 산출하는 보험료는 예시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음



금융감독원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보험감리실 조정석 팀장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
2017.8.30.(수)



목차

- I. 보험회사 인수 기준 및 현황
- II. 고위험직종 종사자 보험가입 확대 방안
- III. 향후계획



I. 보험회사 인수 기준 및 현황

1.1 보험회사 인수 기준

I. “보험회사는 직업별로 차등화된 인수기준을 운영”

- 보험회사는 직업별로 위험수준을 차등화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직군으로 분류하여 운영 (보험회사마다 상이)
 - 일반직군: 보험 가입 제한이 없는 직군
 - 위험직군: 차별적인 조건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직군(예: 보험가입금액 제한, 보험료 할증, 특정담보 부담보 등)
 - 고위험직군: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직군

일반직군	위험직군	고위험직군
- 교사 - 공무원 - 주부 - 학생 - 기타 사무직 등	- 소방공무원(구급, 화재진압) - 경찰공무원(강력계, 특공대, 교통) - 군인(초급장교, 부사관, 일반사병) - 환경미화원 - 우편물 집배원 등	- 스턴트맨 - 곡예사, 차력사 - 자동차 경주 선수(카레이서) - 채석원 - 경정선수(모터보트 레이싱) 등

주: 상기 직업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 전체의 인수기준이 아님(인수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상이)

1.1 보험회사 인수 기준

II.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및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 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보험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직종”을 인수할 경우 위험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고위험직종 가입에 따른 사고율 증가는 향후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일반 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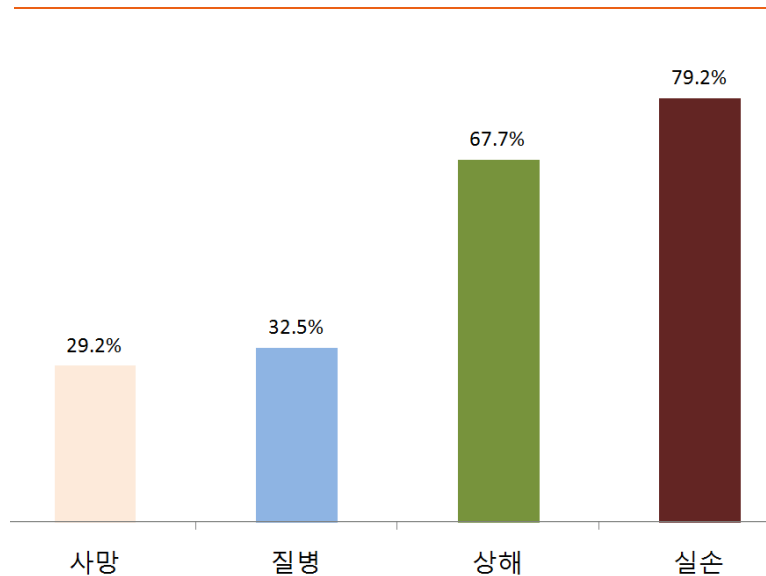
1.2 보험회사 인수 현황

I. “실손의료보험 인수기준이 가장 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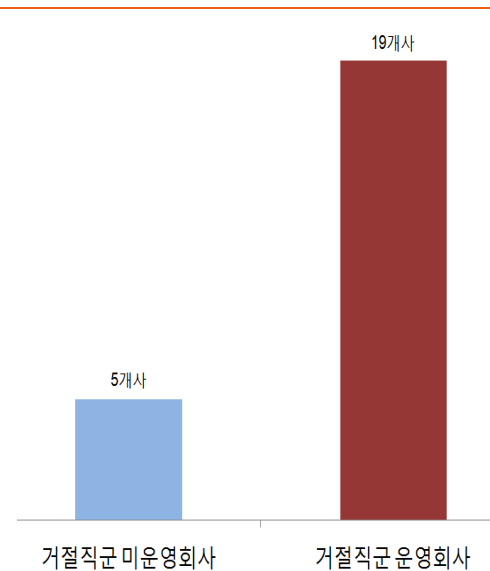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직무에 따라 위험이 차별되는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직무에 따라 손해율이 크게 차별되지 않은 사망보험, 질병보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

보험상품별 거절직군 운영회사 비율



실손의료보험 거절직군 운영회사 현황



주1: 거절직군 운영회사 -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보험회사

주2: 비율 = 거절직군 운영 보험회사 / 해당 보험종목을 판매중인 보험회사

주3: 2017.6월 기준



금융감독원



II. 고위험직종 종사자 보험가입 확대 방안

2.1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수기준 및 관행 개선



“보험사고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 불가피”



“특정 직업군의 사고율이 높다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부족”

-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가입을 거절

“위험률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고위험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

- A보험회사: 상해 위험등급(3등급; D/E등급) 전체 직군의 보험가입을 거절

“수행업무(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아닌 직업별 인수기준”

- 가입 희망자가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

2.1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수기준 및 관행 개선

I.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거절직군 운영 제한

- (목적) 보험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
- (시행)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거절 근거(정당한 사유)를 마련해야 함
 -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수기준상 보험가입 거절 직업/직군을 설정, 운영할 수 없음

※ 합리적, 객관적인 거절 근거란?

- 보험사고 발생 통계, 특정직업과 보험사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자료 등 직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의미

[참고] 민병두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17.1월 발의)

- 차별금지(법 §10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차별할 수 없음**
- 과태료(법 §209)
 - 법 101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1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수기준 및 관행 개선

II. 거절직군 및 위험직종의 가입실적 제출 의무화

- (목적) 보험회사가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
 - * 예시: 인수기준상 거절직군은 아니지만 인수심사 과정에서 전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등
- (시행) 보험가입 거절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예: 6개월 주기)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 감독당국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비명시적 거절직군 실태 현황을 점검



2.1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수기준 및 관행 개선

III.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직무위험 평가 유도

- (목적)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실제 직무행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시행)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 직무행위 세부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마련하여, 해당 항목을 토대로 구체적인 직무 위험평가를 통해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함

* 객관화된 항목: 근무년수, 내근직/현장직 여부, 직무상 취급하는 장비/운전차 종류, 1일 근무시간, 근무지역 등

** 현재 직업고지 항목과 별도로 운영하고 시행 초기에는 단순 참고자료(고지의무 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음)로만 활용 가능



◆ “보험계약 청약서” 직업에 관한 사항 예시(안)

10. 귀하의 직업에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직업에 한해) 귀하의 근무년수는? ① 1년 미만 ② 2~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2) 귀하의 근무업종은? ① 내근직 ② 현장직 ③ 병행(내근직/현장직 비율: 내근 %, 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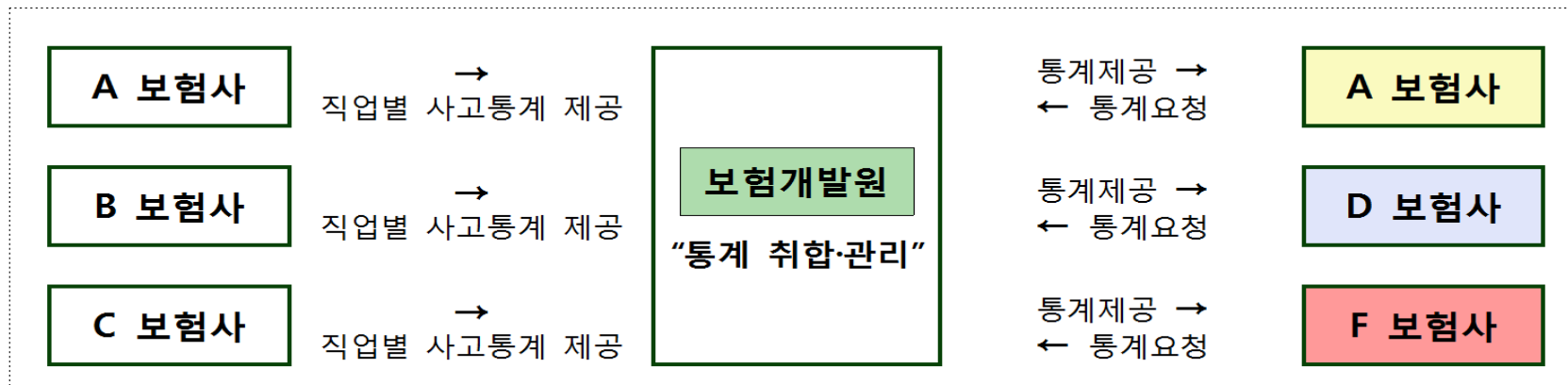
(3) 귀하가 주로 취급하는 운전차 종류는? ① 이륜차 ② 승용차 ③ 건설기계장비 ④ 기타()

※ 보험계약 청약서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시행안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2.1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수기준 및 관행 개선

IV. 합리적 인수기준 설정을 위한 직업별 사고통계 확보

- (목적) 직업별 보험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합리적 인수기준 설정 유도
 - *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상해 3등급 전체를 거절하는 보험회사들의 개선 유도
- (시행) 보험회사 -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통계를 신뢰성 있게 제출
 보험개발원 - 전사 직업별 통계를 집적/관리한 후 보험회사 요청시 직업별 사고통계를 제공
 - * 보험회사가 직업별 사고 통계를 제대로 기입,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지 않아 현재 신뢰성 있는 직업별 사고 통계 확보가 불가능



※ 상기 보험개발원 통계 제출, 집적, 관리 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시행안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2.2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현황 등 정보제공

I. 위험직군 가입현황 등에 대한 공시 시행

- (목적) 보험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달라 고위험직종이라도 전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사 정보를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 '17.8월 현재 5개 생명/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 인수시 “거절직군”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현황이 공시될 경우 비합리적으로 엄격한 인수기준을 운영하던 보험회사가 이를 개선할 여지도 존재

- (시행) 생명·손해보험 공시실에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 등을 제공



◆ 위험직군 가입현황 등에 대한 공시(안)

- 대상: 사망보험(생보),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생·손보)
- 장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기타공시실
- 방법: 반기별(6·12월) 기준으로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시
- 내용: 위험직군 가입비율(상해 D/E등급, 최근 1년간), 거절직군 수

※ 상기 위험직군 가입현황 등에 대한 공시(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시행안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2.2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현황 등 정보제공

◆ 위험직군 가입현황 등에 대한 공시화면(예시)

▶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	위험직군 가입비율 ^{주1}	거절직군 수 ^{주2}	비고
AA생명	27.0%	0	거절직군 미운영
BB생명	12.1%	20	해녀 등 20개 고위험직군에 대해 가입 거절중
FF손보	8.2%	41	41개 거절직군을 운영중이나, 일부 부담보조건을 통해 가입 가능

주1: 최근 1년간 신계약건수 중 전체 가입자수 중 상해위험등급 D/E등급(고위험) 가입자수의 비율

주2: 보험회사 인수기준 상 가입이 불가능한 직군(보험개발원 직업분류표 기준) 수(거절직군수/993개 직군)

주3: 비고란에는 거절직군 운영과 관련한 회사별 특이사항 기재(협회기준으로 일정기준 제시 예정)

주4: 보험가입 거절직군이 없다하여 보험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가입은 개인의 직무상 위험평가,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에 유의

※ 상기 가입현황 등에 대한 공시화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시행안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2.3 위험직종에 대한 차등인수 기회 확대

I.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직업군(거절직군)에 대한 보험료 할증(중장기 과제)

- (목적) 특정 직업군은 직업상 위험이 너무 높아 민영보험사 보험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

* 다만, 현재 직업별 보험료를 차등(1~3등급 보험료 체계)한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이중할증이라는 비판 소지

- (시행) 보험회사의 경험손해율이 특정 수준(예: 200%) 이상인 직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료 할증을 허용

* 초고위험 직업군(거절직군)의 경우 인수사례가 없어 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개발원의 직업별 사고통계가 축적된 이후에 보험료의 할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초고위험 직업군(거절직군) 보험료 할증특약(제도성특약) 예시(안)

- 보험개발원 또는 과거 3년간 회사 경험 손해율이 특정수준(예: 200%) 이상인 직업군에 한해 보험료의 150% 이내에서 보험료 할증이 가능한 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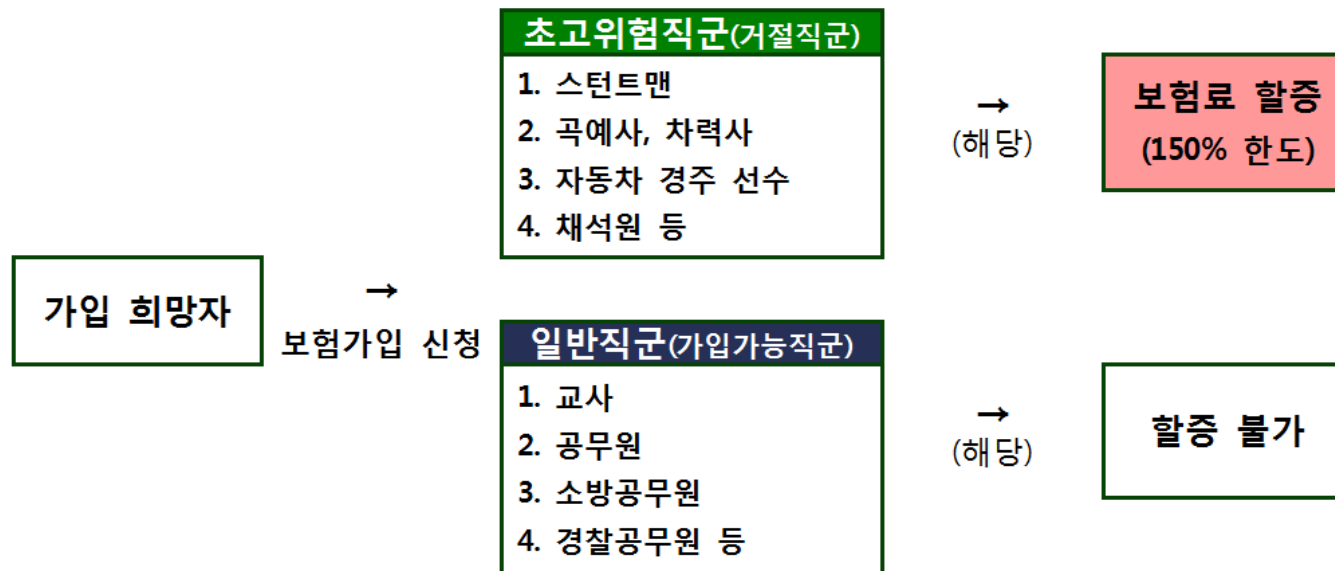
- 금감원은 상품 심사시 초고위험 직업군 설정 적정성에 관한 심사 수행

※ 상기 초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보험료 할증특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시행안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2.3 위험직종에 대한 차등인수 기회 확대

◆ 초고위험(가입거절) 직업군 보험료 할증 특약 운영구조(예시)



주1: 상기 직업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 전체의 인수기준이 아님(인수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상이)

※ 상기 보험료 할증 특약 운영구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시행안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III. 향후계획

3. 향후계획

I.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 여부 검토 (보험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오늘 발표안에 대해 정책토론회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

II. 규정개정, 보험회사 시행준비 등을 거쳐 개선방안 시행



감사합니다